



제317회 남양주시의회 (임시회)  
제4차 복지환경위원회

**가스열펌프(GHP)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**

**지원사업 위탁기간 연장 동의안**

**검 토 보 고 서**

2026. 1

**복지환경위원회**

전문위원 조 공 선

# 가스열펌프(GHP)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위탁기간 연장 동의안

## 1. 제안경과

- 본 안건은 2026년 1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.

## 2. 제안이유

- 저감장치 설치 관련 관리·감독 등 전문성이 필요한 바, 해당 사업을 다년간 환경 분야 업무 대행으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업무의 능률성과 효율성 증대.

## 3. 주요내용

### ○ 위탁사무 내용

- 신청 모집 공고 및 사업장 선정
- 선정사업장의 저감장치 설치 관련 관리·감독
- 설치 확인 및 보조금 집행
- 정산 및 결과 보고

### ○ 위탁시설 개요

- 2022. 12. 31.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하여 운영중인 민간·공공시설

### ○ 위탁기간 : 2025. 4. 28. ~ 2026. 2. 28.(당초) / 2027. 2. 28.(변경)

- 위탁기간 연장 사유 : 저감장치(산요 제품) 성능개선 및 검증, 저감장치 물량 공급 부족으로 인한 부착지연

### ○ 수탁기관 선정방식 : 심의위원회 개최

### ○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

- 사업비 : 198,022천원(국비 56%, 도비 22%, 시비 22%)
- 사업량 : 저감장치 약 63대(약 3,143대/천원)

## ○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구 분	검 토 의 견
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사업 공고 및 대상자 선정, 저감장치 설치 관련 관리·감독 등 사업 전반 업무를 위탁 운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강화</li> <li>○환경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기관의 전문인력, 기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원활한 사업 운영 추진</li> </ul>
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	○사업 공고, 대상자 선정, 선정사업장 관리·감독, 보조금 집행 등 전반적인 사업을 환경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기관에서 주관하여 안정성있는 사업 운영
경제적 효율성	○전문기관 위탁으로 사업기간 단축 등 신속한 업무처리
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	○다년간 환경 분야 업무 대행으로 축적된 경험 및 전문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
성과 측정의 용이성	○해당 없음
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	○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(지도·감독)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·감독 및 점검을 통하여 사업 운영의 투명성 제고
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	○해당 없음
총 합 의 견	○가스열펌프(GHP)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원활히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업무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증대함.

## ○ 기타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### - 그간 추진사항

2025. 3. : 의회동의(최초)

2025. 4. : 위수탁협약 및 사업추진(63대)

2025. 12. ~ 2026. 1. : 기간 연장 검토(준공 30대, 이월 9대, 불용(미신청) 24대)

※ 미신청 24대 : 자부담으로 저감장치 부착, 저감장치 부착된 모델로 전체 교체 등

### - 향후 계획

2026. 2. ~ 12. : 사업추진 및 정산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1

나. 관련부서 : 기후에너지과

#### 5.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2항제 1호 위탁기간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, 저감장치(산요 제품) 성능개선 및 검증, 저감장치 물량 공급 부족으로 인한 부착지연의 사유로 위탁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여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임.
- 검토결과 현 시점에서 위탁공백 발생 시 사업 진행의 중단 및 시민 이용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, 위탁기간 연장의 필요성은 인정됨.
- 다만, 최초 위탁기간은 2025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음에도 이후 시의회의 추가동의 및 협약서 변경 계약 절차 없이 위탁기간이 2026년 2월 28일까지 사실상 연장·변경되었고 결과적으로 2년에 가까운 연속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민간위탁 적정성검사 재 실시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검토 및 설명이 선행되지 않았음.
- 이는 위탁기간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, 재위탁에 준하는 적정성 검토 없이 기간 연장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, 민간위탁 사

전 검토 원칙에 미흡한 측면이 있는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민간위탁 추진 시 사업 종료 시점과 위탁기간을 명확히 특정하고, 위탁기간 변경이 수반될 경우 관련 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.

## ☑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6조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의회 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대하여는 그 위임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위탁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1. 위탁기간의 변경

2.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

3. 그 밖에 재동의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③ ~ ④ 생략

제21조(성과평가)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평가기준과 지표를 정해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.

② ~ ③ 생략